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22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박성민 · 김형동 · 엄태영  
고동진 · 이양수 · 김상훈  
이인선 · 구자근 · 정동만  
신성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3조의2에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소장이 신입자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수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음.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구속·수용으로 실질적인 생계·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정보가 복지·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자자녀가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는 것인데, 범죄 노출 우려에 따른 동의 거부, 학대가해자의 개입, 보호공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한부모 가구의

양육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수용자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3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도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수용자자녀의 기초적인 양육 환경이 박탈되거나 의식주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 자원이 결핍되는 등 그 생명·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은 수용자자녀의 성명·연령·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범죄사실·혐의내용·형기 등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린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 및 알린 내용의 범위를 신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 제5항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는 경우 그 내용은 수용자 자녀의 성명·연령·주소, 연락 가능한 보호자 유무, 보호공백 우려 사유 등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범죄사실·혐의내용·형기 등 수용자 자녀의 보호에 불필요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린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 및 알린 내용의 범위를 신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⑨ 제2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관계 회복 지원,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  
로 정한다.

-----제8항-----  
-----  
-----  
-----.